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56호
2021. 7. 16.(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76호) 1

공 고(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89호) 2
-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공고 제2021-798호) 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99호) 13

입법예고(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84호) ...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86호) · 22
-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96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97호)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801호) 59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273-11	오정로52번길 62	2021. 7. 16.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736, 292-18	대전천북로 350	2021. 7. 16.	건물신축	대전천의 북쪽에 위치한 천변 도로
연축동 18-1	신탄진로162번길 150	2021. 7. 16.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동 778	산디로132번길 45	2021. 7. 16.	건물신축	산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313-8	석봉로30번길 6	2021. 7. 16.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7. 16. ~ 2021. 7. 29.(14일간)
4.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3,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로1**번길 7(가능동)	69저****	2021-06-02 21:01:31	신탄진동 118-5	2021.06.15	2021.06.18	폐문부재
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86번길 25, 3**호(비래동)	38리****	2021-06-03 15:26:26	오정동 500	2021.06.15	2021.06.17	폐문부재
3	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4, 2**동 17**호(선부동, e편한세상 선부)	84부****	2021-06-06 10:00:39	송촌동 494-1, (509동3-4라인)	2021.06.15	2021.06.18	폐문부재
4	박**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8-10, 19**호(평화2차아파트)	59어****	2021-06-06 16:33:10	미호동 57-3	2021.06.15	2021.06.16	폐문부재
5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리북로 46, 1**동 13**호(법동, e편한세상)	34어****	2021-06-06 18:50:54	법동 448	2021.06.15	2021.06.17	폐문부재
6	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41, 2**동 11**호(신탄진동, 대우새여울아파트)	05머****	2021-06-07 23:09:40	신탄진 새여울대우아파트	2021.06.15	2021.06.17	폐문부재
7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41번길 16-11, *동 4**호(오정동, 우당아트빌라)	88다****	2021-06-09 10:22:49	오정동 449-1	2021.06.15	2021.06.17	수취인부재
8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71번길 34, 1**동 11**호(장대동, 장대푸르지오아파트)	97두****	2021-06-12 17:42:43	송촌동 494-1	2021.06.21	2021.06.23	폐문부재
9	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6*번길 2*(가양동)	84도****	2021-06-07 08:21:00	종리동 230-3	2021.06.21	2021.06.23	폐문부재
10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43, *동 5**호(덕암동)	59누****	2021-06-15 19:58:40	덕암동 340	2021.06.21	2021.06.23	폐문부재
11	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4, 2**동 17**호(선부동, e편한세상 선부)	84부****	2021-06-22 20:39:08	송촌동 494-1, (509동1-2라인)	2021.06.30	2021.07.07	폐문부재
12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1-06-24 07:06:15	법동 440-4	2021.06.30	2021.07.07	폐문부재
13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51번길 2, 1**동 5**호(쌍촌동, 신천힐탑맨션)	81주****	2021-06-27 09:19:17	법동 214	2021.06.30	2021.07.08	폐문부재
14	이**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 *동 4**호(홍도동, 청룡아파트)	11두****	2021-06-27 16:20:10	법동 191-1	2021.06.30	2021.07.08	폐문부재
1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말3길 41, 1**동 8**호(상서동, 상서행복주택)	376루*** *	2021-06-15 23:38:00	상서동 843, 상서행복주택 102동앞	2021.06.30	2021.07.07	폐문부재
16	민**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24번안길 58, 2**호(도안동)	37고****	2021-06-28 16:55:05	문평동 10	2021.06.30	2021.07.07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7	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122번안길 2, 3**호(산성동, 은광주택)	11두****	2021-04-21 00:02:21	법동 284-1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18	양**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0번길 34, 3**호(장대동, 아름빌라)	11너****	2021-05-05 05:03:24	법동 284-1	2021.07.06	2021.07.08	이사불명
19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3번길 39, 2**호(선화동)	01수****	2021-05-08 10:10:59	비래동 118-3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20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13번길 26, 4**호(덕암동, 새한빌라)	대전80 너****	2021-05-09 16:04:28	연축동 102	2021.07.06	2021.07.07	이사불명
21	신**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용초길 1*2-5	45노****	2021-05-09 11:21:00	비래동 140-6(엠마트)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22	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	88리****	2021-05-13 13:58:55	오정동 705-40	2021.07.06	2021.07.07	폐문부재
23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1-05-15 07:57:11	법동 440-4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24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동 12**호(법동, 보람아파트)	25버****	2021-05-15 13:35:18	법동 191-1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25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13번길 26, 4**호(덕암동, 새한빌라)	대전80 너****	2021-05-16 22:07:16	연축동 102	2021.07.06	2021.07.07	이사불명
26	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지로 28-1, 1**호(산성동)	104하**** *	2021-04-18 21:27:00	송촌동 448-1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27	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122번안길 2, 3**호(산성동, 은광주택)	11두****	2021-05-03 23:43:30	법동 284-1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28	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자마을길 1*(평촌동)	41고****	2021-05-17 16:01:01	신일동 1685-2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29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덕암동)	22고****	2021-05-23 07:46:11	연축동 102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30	진**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51번길 2*-, 2층호(용전동)	115리**** *	2021-05-26 13:16:08	송촌동 494-1 (502동 5-6라인)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31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13번길 26, 4**호(덕암동, 새한빌라)	대전80 너****	2021-05-30 07:44:57	연축동 102	2021.07.06	2021.07.07	이사불명
32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1**동 13**호(법동, e편한세상)	34어****	2021-05-30 10:32:14	법동 448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3	문**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91번길 65, 2**호(가양동)	86누****	2021-03-27 09:46:45	오정동 705-7	2021.07.06	2021.07.08	수취인불명
3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30, 2**호(중리동)	24저****	2021-04-04 14:26:37	덕암동 13-1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35	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79번길 17, 2**호(선화동)	37마****	2021-04-03 10:17:46	송촌동 364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36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6**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55너****	2021-04-09 06:55:00	석봉동 770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37	이**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신대길 5*-*	38조****	2021-04-19 13:18:33	상서동 828-15	2021.07.06	2021.07.08	주소불명
38	(주)공사 랑****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양정향한길 *	90너****	2021-04-19 16:28:35	오정동 705-40	2021.07.06	2021.07.07	폐문부재
39	강**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69, *동 3**호(옥계동, 신진옥계빌라)	97조****	2021-04-19 18:41:46	대화동 3-3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40	신**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62, 1**동 19**호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12보****	2021-04-19 08:57:55	상서동 834-3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41	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4, 2**동 17**호(선부동, e편한세상 선부)	84부****	2021-04-23 22:10:24	송촌동 494-1	2021.07.06	2021.07.09	폐문부재
42	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13-32, 1*2동 1**호(계룡파라디아아파트)	245부****	2021-04-24 21:38:46	법동 191-1	2021.07.06	2021.07.07	폐문부재
43	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13-32, 1*2동 1**호(계룡파라디아아파트)	245부****	2021-04-27 00:01:45	법동 191-1 (보람@103동3-4라인)	2021.07.06	2021.07.07	폐문부재
44	(주)천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읍내동)	42리****	2021-04-28 19:05:00	법동 285-3	2021.07.06	2021.07.08	폐문부재
45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11번길 *4, 3**호(중리동)	35리****	2021-03-14 17:12:28	중리동 462	2021.07.07	2021.07.09	폐문부재
46	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미다리길 2*-*	246다**** *	2021-03-15 00:11:50	법동 389	2021.07.07	2021.07.09	수취인부재
47	한**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3번길 7, 3**호(홍도동)	54머****	2021-03-15 15:38:04	오정동 226-22(대전신학대학교)	2021.07.07	2021.07.09	수취인불명
48	황**	대전광역시 서구 용화4길 17, 2**호(도마동)	54모****	2021-03-22 15:14:41	오정동 449-1	2021.07.07	2021.07.09	폐문부재
49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6**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55너****	2021-03-27 00:45:13	석봉동 770	2021.07.07	2021.07.09	폐문부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호 및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전 범죄·방화 등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및 주민공동시설 구축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세부 추진계획 참조

- 가. 사업명: 빈집정비사업
- 나. 사업기간: 2021년 6월 ~ 12월
- 다. 사업내용: 빈집 철거(지원) 및 공동시설 조성
- 라. 시행자: 빈집 철거(소유자) 및 공동시설 조성(區)
- 마. 사업예산: 60,000천원
- 바. 지원비율: 철거비 전액지원 / 최대950만원(4년 공공용지 사용조건)

2.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대덕구 관내 빈집

-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빈집
- 나.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빈집정비 지원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 제외
※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 지원 가능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현지개발방식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부추진계획

가. 정비방법

- 1) 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 직접정비 원칙(시행자 위탁가능)
- 2) 철거 후 4년간 주민 공동시설(텃밭, 꽃밭, 주차장 등)로 제공
- 3) 해당 동의 주민 의견 수렴하여 공동시설 조성(區) 후 유지관리(洞)

나. 정비대상

[단위: 호, %]

구 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계
2019년 12월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250 (45.9)	192 (35.3)	76 (14.0)	26 (4.8)	544 (100)
단독주택	80	121	47	14	
공동주택	151	46	5	1	
기 타	19	25	24	11	

※ 한정된 예산으로 3, 4등급 빈집을 우선 정비추진

다. 지원금액: 60,000천원

- 1) 민간자본이전(47,500천원)으로 빈집철거 5동 지원(각 동 최대950만원) / 신청자
- 2) 사업예산 한도(시설비12,500천원) 내에서 공동시설 조성 / 區

라. 선정기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선정

구 번	선 정 기 준				비 고	
	先		後			
1. 등급산정	先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 소유자능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3. 도시미관**		대로	중로	소로	맹지	
4. 범죄발생	後	건물 내 출입가능		부지만 출입가능	출입불가	

※ 공동시설은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해당 洞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예정

※ 1~4순위 모두 동일 시 준공년도 오래된 건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계층

*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분류

4.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7. 16.(금) ~ 2021. 12. 31.(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별관4층 도시계획과

다. 접수방법: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 E-mail, FAX

(1) 주 소: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별관 4층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2) E-mail: bti0629@korea.kr

(3) F A X: 042-608-3841

라. 기타사항

(1)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2) 방문접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 전화로 확인바람(☎042-608-5374)

5. 제출서류

가.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나. 철거 견적서 각 1부(2곳 이상 견적)

다. 빈집 철거 활용 동의서 1부 **【붙임2】**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3】**

6. 심사 및 통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대상자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모집에 지원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537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1】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

(앞쪽)

빈집 현황	①위 치			
	②구 조		③용 도	
	④층 수		⑤연 면 적	
	⑥준공년도		⑦전면도로 폭	
소유자 현황 (빈집 및 토 지)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⑧저소득층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철거 계획	⑨철거 예정일		철거면적	
	⑩예상 비용(원)			
	⑪철거 후 계획			
<p>상기와 같이 빈집을 철거 후 활용할 예정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p> <p style="text-align: right;">소유자: (서명)</p>				
<p>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p>1. 빈집철거 견적서 각 1부.(2곳 이상 비교견적) 2. 빈집 철거 활용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p>			

※ 작성방법

- ① 철거 예정인 빈집 위치를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기입합니다.
- ②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기입합니다. 예) 블록조,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③ 건축물의 주요 용도를 기입합니다.(여러 용도가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많은 용도를 기입)
- ④ 건축물의 최대 층수를 기입합니다.
- ⑤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⑥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년도를 기입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항공사진 판독 축조 추정년도(추정 범위 중 최근년도)를 기입합니다.
- ⑦ 전면도로(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을 기입합니다.(2개 이상일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의 폭을 기입)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계층을 표기합니다.
- ⑨ 철거 완료 예정일을 기입합니다.
- ⑩ 철거 견적 비용을 기입합니다.(2곳 이상 견적서 첨부)
- ⑪ 철거 후 주민 공동 활용 계획을 기입합니다. 예) 주차장, 텃밭, 쉼터

【붙임 2】

빈집 철거 활용 동의서

- 빈집 위치:
- 건축물 현황
 - 구 조:
 - 연 면 적:
 - 층 수:
- 소유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빈집 철거 후 활용에 대한 동의
 - 위 빈집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인 책임 하에 철거를 할 예정이며, 철거 후 4년(철거 완료일로부터 계산) 동안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 만약 의무기간 내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다른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공활용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수령한 보조금을 즉시 반환할 것이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21. . .

빈집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덕구청장 귀하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7. 30.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30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조서

연번	성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대상	상세주소부여 기초조사 결과(각 호)	사유
1	박*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31, 2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31	지층 101, 102 201, 202 3층	폐문부재
2	전*우	대덕대전광역시 구 계족산로5번안길 4, 2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안길 4	지층 101, 102 2층 3층	폐문부재
3	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4동 60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31-1	101, 102 2층	폐문부재
4	김*성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내배방길 34-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20번길 22	지층 1층 2층 3층	수취인불명
5	김*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2번길 42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2번길 42	지층 1층 2층 3층	폐문부재
6	한*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1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128	지층 101, 102 2층 3층	폐문부재
7	남*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77번길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77번길 40	지층 101, 102 201, 202 301, 302	폐문부재
8	최*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07동 6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25번길 1	지층101, 102 101, 102 201, 202 3층	폐문부재
9	권*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2번길 74, 4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2번길 74	101, 102, 103, 104 201, 202, 203, 204, 205, 206 301, 302, 303, 304, 305, 306 4층	폐문부재

연번	성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대상	상세주소부여 기초조사 결과(각 호)	사유
10	전*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97, 1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97	1층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수취인불명
11	임*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55-1, 4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55-1	1층 201, 202, 203, 204, 205 301, 302, 303, 304, 305 4층	폐문부재
12	최*범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48번안길 126-15, 4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48번안길 126-15	101, 102, 103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층	폐문부재
13	최*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15-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15-11	1층 2층	폐문부재
14	박*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15-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15-15	1층 2층	폐문부재
15	박*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4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47-15	1층 2층	폐문부재
16	서*윤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50번길 27, 107동 14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4번길 46	1층 201, 202, 203 301, 302, 303 4층	폐문부재
17	박*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음달길 49-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16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폐문부재
18	최*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76번길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76번길 22	1층 2층	폐문부재
19	이*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70, 1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70	101, 102 2층 3층	폐문부재
20	이*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114, 1104동 3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흥도로135번길 12	지층 101, 102 201, 202, 203, 204 3층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으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2항).
 - 나.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복합문화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동) 복합 문화센터 송촌도서관 사무실(전화: 042-608-5882, 팩스: 042-608-3863, 이메일: sysm95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담당자 김상숙(전화: 042-608-58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독서 진흥)”을“(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 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로, “개최하거나”를 “개최하여야 하며,”로, “이를”을 “독서 관련 행사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u>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u>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u>개최하거나</u>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u>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 ----- <u>독서 문화진흥</u>----- -----.</p> <p>② <u>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u> ----- <u>개최하여야 하</u> <u>며, ----- 독서</u> <u>관련 행사를 --- 필요한 경비</u> <u>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u> <u>있다.</u></p> <p>③ <u>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u> <u>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u> <u>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u> <u>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u> <u>제공할 수 있다.</u></p> <p><u>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u> <u>등</u></p> <p><u>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u></p> <p><u>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u></p> <p><u>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u> <u>한 독서문화축제 등</u></p> <p>④ <u>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u> <u>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u> <u>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u> <u>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u></p>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개정, 2021.12.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위촉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을 조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전화: 042-608-6713, 팩스: 042-608-3825, 이메일: ilmozar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전용림 (전화: 042-608-6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중 공개대상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전자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제3항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② (생략)</p> <p>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
<p>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과 구</p>	<p>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p>

청장이 위촉하는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

----- 행정지원국장-----.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

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
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
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
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
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
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

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구민, 기업 등 누구나 기존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면 공무원이 그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반영하여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안 제명).
 - 나.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인 “규제입증책임제”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규제의 신설·강화 시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서식).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063, 팩스:
042-608-3811, 이메일: remoteimag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성희
(전화: 042-608-60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신고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중앙”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
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대전광역시 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규제의 심사) ① <u>조례 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 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 · 규칙안과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대전광역 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 <u>필요한</u> ----- -----.</p> <p>제2조(규제의 심사) ① <u>대전광역 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 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 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u></p> <p>② <u>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 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 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u></p>

<p>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u>규제신고센터</u>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u>중앙</u>에 건의할 대 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u>각호</u>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1. 2. (생략) ② (생략)</p>	<p><u>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 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 다.</u></p> <p>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u>규제신고센터</u>----- ----- <u>중앙행정기관</u>----- ----- <u>각호</u>----- -----.</p> <p>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조례: 평일 및 주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시행규칙: 민간위탁 협의 시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운영협약 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 (1)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안 제2조제13호·제14호).
 - (2) 신규 시설(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 나. 시행규칙

- (1) 행정안전부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인감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제2호).
- (2) 감사원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권고 방안」에 따라 민간 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8.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전화: 042-608-6272, FAX : 042-608-3823, E-mail : ho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김동후(전화: 042-608-6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평일 및 주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안 제2조제13호·제14호).
- 나. 신규 시설(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21. 00. 00. ~ 2021.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 체 육 관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 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 당 해당 시설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 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 시간 미만인 경우에 는 1시간으로 계산	
	체육경기 이 외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을 미 기 축 구 장	체육경기	1회 (1일,2시간)	30,000	50,000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체육경기 이 외	1회 (1일,2시간)	60,000	100,000		
		1회 (1일,4시간)	100,000	150,000		
을미기공원 족구장	체육경기	1면,2시간	3,000	5,000		
대 덕 국 민 체 육 센 터	수 영 장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200,000		300,000
		체육경기 이 외	1회 (1일,4시간)	300,000		450,000
	다 목 적 실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 료 기준
송촌생활체육 공원풋살경기장	체육경기	1면,1시간	10,000	20,0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 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	
대 청 수 상 레 포 츠 센 터	체육경기	1회 (1일,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 18시)	
	체육경기 이 외	1회 (1일,8시간)	1,300,000	1,800,000		
덕암체육공원 야 구 장	체육경기	1회 (1면,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 18시)	
	체육경기 이 외	1회 (1면,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월 회원권	40,000				
	헬스장	1회 이용	2,0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50,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코트 (1면,1시간)	2,000		○조명사용 시 3,000원 추가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5,000	4,000	3,000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수레포츠센터	청상레포츠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기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광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u></p> <p><u>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p>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의 시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운영협약 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인감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제2호).

나. 감사원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권고 방안』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21. 00. 00. ~ 2021.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신청) ①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u></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관리·운영협약)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u>체결하여야</u> 하며, <u>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5조(위탁신청)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리·운영협약) ① ----- ----- ----- ----- ----- ----- ----- <u>체결하여야</u> ----- -----.</p> <p><u><단서 삭제></u></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생략)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② ~ ④ (생략)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② ~ ③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학축하금을 대덕구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입학축하금 지원 자격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입학축하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미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미래교육과(전화: 042-608-6372, FAX:
042-608-3838, E-mail: choch8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래교육과 담당자 조창환
(전화: 042-608-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입학축하금은 대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주민등록지 관할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 주소지(도로명주소)		
	학생과의 관계		
입학 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학교명	입학일	
입학 확인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등) 신분증 지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접수 시(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연락처	

대 덕 구 청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등과의 관계
 - 보호자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